

瑞山市市立圖書館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
審 查 報 告 書

1. 審 查 經 過

- 가. 提出日字 : 1999. 7. 23
- 나. 提出者 : 瑞 山 市 長
- 다. 回附日字 : 1999. 7. 23
- 라. 上程日字 : 1999. 7. 29

2. 提 案 說 明 要 旨 (提 案 說 明 : 市 立 圖 書 館 長 朴 奉 雨)

가. 提 案 理 由

- 現 行 「 서 山 市 市 立 圖 書 館 圖 書 館 使 用 料 徵 收 條 例 中 改 正 條 例 案 」 (이 하 “ 조 례 ” 라 한 다) 의 규 정 에 의 거 사 용 료 징 수 업 무 를 추 진 하 면 서
 - 사 용 허 가 및 사 용 료 에 대 한 규 제 를 완 화 하 고
 - 現 行 제 도 상 나 타 난 문 제 점 을 개 선 · 보 완 하 고 자 개 정 하 려 는 것 임 .

나. 主 要 骨 子

- 동 조 례 안 제 4 조 (시 설 사 용 허 가) 제 4 항 중 단 서 조 항 인 “ 관 장 이 특 별 한 사 유 가 있 다 고 인 정 할 때 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한 다 ” 는 규 정 삭 제

- 사용료의 반환에 있어 “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” 반환토록한 규정을 “사용료 전부”로 정함.
- 동조례안 제13조의 입장의 제한 조항중 제4호의 “타인이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”에 대한 규정중
 - 타인이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는 자에 대한 내용 삭제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- 동조례안은 현행 「시설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」는
 - 관장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이용자 입장에서 불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민원발생 규정을 삭제하였고,
 - 납부된 사용료에 대한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등을 도모하는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동조례안 제13조의 입장제한 규정은
 - 서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과 중복되므로 동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
5. 討論 및 少數意見 : 없었음

6. 審査結果 :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제 29 호
의결년월일	1999. . . (제 회)

서산시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1999. 7. 23 .

서산시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89

제출년월일 : 1999. 7. .

제 출 자 : 서 산 시 장

□ 개정사유

-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사용허가 및 사용료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현행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가. 종전에는 “시설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. 다만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”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이용자 입장에서 허가함(안 제4조제4항).
- 나. “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”로 하였으나 단서 조항중 “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”를 “사용료의 전부”로 함으로서 사용료반환 규정을 명확하게 함(안 제8조본문).
- 다. 종전에는 “타인이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자”로 하였으나 “전염성 질환이 있는자”로 관련조항 완화(안 제13조제3호).

□ 참고사항

- 입법예고 : 해당없음
- 규제개혁심의회 심의('99. 6. 23) 결과 → 완화·폐지

서산시에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

서산시에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중 단서를 삭제한다.

제8조본문중 “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”를 “사용료 전부”로 한다.

제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전염성 질환이 있는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산시에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에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중 단서를 삭제한다.

제8조본문중 “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”를 “사용료 전부”로 한다.

제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전염성 질환이 있는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개
<p>제4조(사용허가) ① ~ ③(생략)</p> <p>④시설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. <u>다만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</u></p>	<p>제4조(사용허가)①~③(현행과 같음)</p> <p>④----- ----- -----(단서 삭제)</p>
<p>제8조(사용료의 반환)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<u>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</u>”</p> <p>1. ~ 3. (생략)</p>	<p>제8조(사용료의 반환) ----- ----- -----</p> <p><u>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.</u>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3조(입장의 제한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<u>타인이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자</u>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13조(입장의 제한)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전염성 질환이 있는자</u>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